

국토교통부 훈령 제1674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40호, 2023.7.19.)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시행자(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협약체결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23.3)하였음. 다만,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물가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 구체화(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1)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처협의 완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없음

국토교통부 훈령 제1674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의2 중 “예상”을 “협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의2 중 “예상”을 “협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상”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6. (생략)

6의2.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사업비 조정 요건,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7. ~ 10. (생략)

②·③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협약 체결일부터 준공일

까지의 기간 동안 예상-----

7.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